

세무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1년 9월 pp.105~128
한국세무학회

세대생략할증과세에 관한 소고

임동원*

<요 약>

본 연구는 세대생략할증과세에 관한 현행 상증세법과 외국의 세제를 살펴본 후, 이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제도 자체, 입법목적, 다른 제도와 의 형평성, 사회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현행 상증세법이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 있다. 두 제도는 상호모순적인 관계이므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유산취득과세를 취할 때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일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여건상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주된 입법목적인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 조세회피를 위한 비용이 증가되는 것보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조세회피의 동기를 감소시키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두 가지 제도와 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먼저 가업승계제도를 지원하는 데 반하여 근본적인 목적이 동일한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형평상 불합리하다. 또한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단기재상속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데, 후자의 경우에는 단기재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 전자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된 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그 목적과 실질이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다른 제도만큼 완화해 주는 것이 제도 간 형평에 있어 타당할 것이다.

네 번째,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세대를 생략한 부의 이전에 대한 문제가 경제 및 사회의 현황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고, 경제의 국제화로 인한 국제조세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세대생략할증과세, 상속세, 유산과세방식, 조세형평성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박사과정(법제처 연구원), fresh911@hanmail.net, 010-6405-3974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1950년 도입되었다. 당시 상속세 도입목적은 재정수입의 확보라기보다는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후 상속세는 17차례의 부분개정을 통하여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1997년 IMF 경제관리체제 이후 상속과세는 정부정책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어울려지면서 강화 일변도로 추구되어 왔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들은 1990년대 이후 상속과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국경이 낮아지는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여 자국의 조세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상속과세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이유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속과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저축이 감소되고 투자재원의 축적이 저해되어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자본자유화에 편승하여 국부가 국외로 유출되며, 부유한 계층이 국적을 상속과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국의 상속세 완화정책 중 특기할 만한 것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 완화로,¹⁾ 젊은 세대가 조기에 유산을 승계 받아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속과세에 관하여 가업승계제도의 장려 내지 평가방법의 개선²⁾만을 하여 부분적으로 접근할 뿐 상속과세 전반에 대한 다른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을 장려한다는 큰 틀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조세의 공평과 효율(중립)이라는 큰 명제 간의 비교형량의 문제이지만, ‘1세대 1회 과세’라는 원칙하에 이루어지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현재 경기부양을 위한 부의 이전장려라는 큰 명제 하에 그 타당성이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세대생략할증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상속에 있어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제도 하에서 1세대 1회 과세 원칙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보이고, 단기재상속공제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장려와 다르게 세대생략할증과세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

1) 일본의 경우 2008년 하반기에 발표된 세제조사회의 답신에 의하면, 바람직한 형태의 세제로서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재정건정화를 두 개의 축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직면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경기 대책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日本税制調査會 2008.11).

2)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일몰연장, 그 밖의 평가방법 개선 등 뿐이다.

다. 세대생략할증과세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로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고령화·국제화된 사회에서 오히려 자산의 적절한 활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속과세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 폐지에 대한 선행연구와 논의는 다양하게 있지만,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완화 내지 폐지를 논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다. 본고에서는 세대생략할증과세에 관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에서는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에서의 최근 세제동향을 비교·검토한 후, 이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제도

1. 연혁 및 도입이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상증세법 전면개정시 조부가 1세대를 뛰어넘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증여함으로써 그 자녀가 부담하여야 할 한차례의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생략이전에 대하여는 일반 상속·증여시의 세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재정경제부 1994, 229-230). 이후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상증세법 개정시 1세대를 뛰어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률을 상속·증여세의 현행 평균실효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30%로 강화하였다(재정경제부 1997, 350-351).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후에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회풍조에 따라 그 할증률을 강화하여 왔다.

세대생략이전에 대한 과세문제는 주로 미국에서 논의되어 실정법으로 입법화되었다. 그 연혁적 배경은 신탁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 납세자들이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세대를 생략한 채 유산을 무상 이전하는 방법으로 유산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풍조가 만연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대생략이전으로 재산을 무상 취득하는 자는 대부분의 경우 연령이 어려서 그 재산을 적정한 투자에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富)를 천계천족 집단 내로 집중시키면서 생략 이전되는 세대가 부담했어야 할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이창희 2008, 1069; 이태로 외 2009, 653; 임승순 2010, 783).

국내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이유로 세대생략의 재산무상이전은 1세대 1회 부과의 원칙, 부의 광범위한 분산유인 등의 여러 가지 목적 중 어느 것과도 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과세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최명근 1993, 122).

2. 현행 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에 따른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법 제27조). ‘대습상속’이란 상속개시 당시 생존했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예컨대, 손자 또는 배우자³⁾)이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세대생략가산액은 다음과 같다.

〈표 1〉 세대생략 가산액

$$\text{세대생략 가산액} = \text{상속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피상속인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text{총상속재산가액}} \times \frac{30}{100}$$

<표 1>에서 ‘피상속인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⁴⁾ 또한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고,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⁵⁾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직계비속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세대생략 가산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⁶⁾

증여에 있어서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

3) 이처럼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A의 사망 시 A에게는 유족으로서 배우자 B, 아들 C가 있고, A의 딸 D는 1년 전에 사망하였다. D의 남편 E는 재혼하지 않고 D와 사이에서 태어난 F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 이 경우 A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B(배우자), C(직계비속), E, F(대습상속인)이다.

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8(2007.12.28).

5) 재산세과-149(2010.3.10).

6) 국심 2001서0104, 2001.4.3.

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제57조). 세대생략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사항이 있다면 그 증여세 또한 세대생략할증과세의 대상이 된다.⁷⁾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대생략할증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⁸⁾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는 예컨대 조부가 그의 자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일부를 그의 손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로 상속이 되고 그 자녀에서 다시 다음 세대로 상속이 되면 2번 상속세가 과세되는 데 비하여,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로부터 손자녀로 바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가 한번 밖에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대생략상속에 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다. 다만, 직계 조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에만 가중과세가 되고, 방계조부로부터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뛰어도 그렇지 않다.⁹⁾

이에 대한 과세는 그 이론적 근거를 1세대 1회 부과 원칙에 두고 있다. 상속과세를 1세대 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과세하는 조세라고 이해하는 입장인 것이다.

III. 외국 입법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대생략에 관한 할증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아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미 국

가. 개 요

세대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ax)는 1976년에 세대를 뛰어넘어 상속되는 유산신탁(estate trust)에 대하여 권리나 지분을 가진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입되었다.¹⁰⁾ 세대생략세는 세대별로 순차적으로 자산이 세습되거나 아니면 신탁을 통하여 한 세대를 건너서 자산이 세습되든지 양쪽이 모두 유사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중간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하여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소득배당을 과세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John 2003, 21).

7) 국심 2004서2479, 2004.11.3.

8) 재산세과-1133(2009.6.9).

9)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재삼 46014-1712(1997.7.14)].

10) The Tax Reform Act of 1976, § 2006.

세대생략세는 유산인의 세대보다 2세대 이상 젊은 친족이나 유산인보다 37.5세 이상 젊은 친족이 아닌 사람이 직접 받는 자산이나 신탁의 이전에 대하여 적용된다.¹¹⁾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자산 양도는 세대생략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유산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지분 양도가 발생해야 세대생략세가 부과된다. 세대생략세는 단일세율로 유산세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유산세와 마찬가지로 세대생략세도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500만 달러 한도의 면세가 적용되며, 2010년에는 한시적으로 유산세와 함께 폐지되었다가 2011년 다시 부활하였다.¹²⁾ 그 과세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과세체계

(1) 납세의무자

세대생략세도 기본적인 유산세 방식에 따른다. 세대생략세의 납부자는 그 유형에 따라 자산이 전자(증여자; transferor), 신탁 관리인(trustee) 혹은 세대를 생략한 수증자(skip person distributee; transferee)가 된다(IRC Section 2603).

첫 번째 직접적인 세대 생략 양도에서는 자산을 이전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신탁 자산지분 종료(termination of interest)의 경우에는 신탁 관리인이 세금을 납부한다. 세 번째, 과세대상 소득(원금) 분배에 있어서 수증자가 세대생략세를 납부한다. 유산 신탁 관리인이 세대생략세를 납부하면 이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배분한 것으로 간주된다(Randall 2005, 283).

(2) 과세대상

세대가 생략되려면 수증자가 자산을 양도해주는 사람보다 2세대 이상 젊거나 혹은 이와 같은 사람이 신탁의 지분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세대 젊은 사람이 자산의 일부를 소유하면 세대 생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면 직접적인 세대 생략이 된다. 또는 할아버지가 신탁의 소득을 아버지에게 제공하고 아버지 사망 시 잔여 자산을 손자에게 양도하면 세대를 생략한 자산 이전이 된다. 반면에 다이너스티 트러스트(dynasty trust) 같은 신탁을 만들어서 여러 세대의 사람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세대생략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¹³⁾

11) IRS Form 709 Instructions.

12) 미국이 상속과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는 동안 학계 내지 조세정책가들은 상속과세를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 수년간 논쟁을 거듭하였다. 결과적으로 폐지론을 채택하여 유산세와 세대생략세를 폐지하였었다(川端康之 2004, 32-33; Gale 2000, 60).

13) 자산 이전을 신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수증자는 신탁의 관리인이자 수혜자가 되므로 신탁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탁의 재산이고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장점도 있다([http : //www.investopia.com/articles/tax/09](http://www.investopia.com/articles/tax/09)).

예외적으로 부모가 사망한 손·자녀에 대한 양도는 세대 생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IRC Section 2612(c)(2)). 1997년 이후에는 직계자손이 없는 사람의 방계 피상속인에게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법에서 세대생략세는 크게는 두 가지 경우에 부과될 수 있다. 첫 번째, 세대를 생략한 직접적인 이전(direct skip), 두 번째, 세대를 생략한 사람에게 자산이 이전되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는 이전(indirect skip)이 있다(IRC Section 2612(a)). 두 번째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대를 생략한 자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의 과세대상 소득(원금) 배당(taxable distribution)과 과세대상 신탁자산 지분의 종료(taxable termination)이다(IRC Section 2612(b), (c)). 직접적인 증여를 제외한 다른 두 가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 시점에 증여세만 부과하고 그 이후 소득(원금) 배당이나 지분 종료가 발생할 때 세대생략세가 부과된다. 다만, 권리의 종료 직후 지분을 세대를 생략하지 않은 사람(non-skip person)이 보유하거나 종료 이후 기금으로부터 세대를 생략한 사람(skip person)에게 소득 등이 배당되지 않으면 세대생략세는 적용되지 않는다(Randall 2005, 278).

세대생략세가 부과려면 세대가 생략된 사람에게 유산(증여)세가 적용되는 자산지분의 양도가 발생해야 한다(IRC Section 2652(a)(3)). 자연인에게 자산 양도가 발생하면 세대생략세 목적상 모든 양도 자산이 그 대상이 된다. 한편 신탁(GST trust)에게 자산이 양도되면 신탁의 수증자가 신탁의 소득이나 원금(corpus)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권리(present right)가 있어야 한다. 이외 일반 지명 권한을 보유하는 등 기금 소득이나 원금에 대하여 현재의 수증자이면 이러한 기금에 대한 자산이전도 세대생략세의 대상이 된다(IRC Section 2612(d) ; Randall 2005, 279).

(3) 과세표준

세대생략세에 있어서 과세산정 방식은 유산세 등과 같은데 과세대상인 소득(원금)배분이 있는지 아니면 신탁 자산지분의 종료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Randall 2005, 281-282).

직접적인 세대 생략 양도에서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며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자가 살아 있는 동안 직접 이전된 자산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금액과 세대생략세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된다(IRC Section 2623).

신탁 자산지분 종료의 경우 권리가 종료된 시점에 평가된 자산 가액이 과세대상이며 기금 경비, 해당 자산 부채 그리고 종료와 관련된 부동산세와 매각비용 등 직접비용이 공제된다(IRC Section 2622). 이 경우에는 기금 관리인이 세금을 납부한다.

과세대상 소득(원금) 분배에 있어서 세대생략세가 적용되는 금액은 수증자가 배당받은 금액에서 세대생략세의 결정, 징수와 환급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세율(산입비율 감안)로 곱한 금액을 수증자가 세대생략세로 납부한다(IRC Section 2621(a)).

세대를 생략하고 양도되는 자산에 대해서도 유산 혹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을 한도

로 세대생략세가 면제된다. 자산 양도자는 평생 동안 500만 달러를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세대생략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기본 면세는 일단 선택하면 취소될 수 없다(IRC Section 2632).

(4) 세율

세대생략세는 유산세 최고 세율을 산입비율(inclusion ratio)로 곱한 단일세율로 과세된다(IRC Section 2641). 이 때 적용되는 유산세 세율은 세대를 생략한 자산 이전이 발생한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2011년 최고 세율은 35%이다. 신탁의 관리자는 장래 소득(원금) 배분과 지분 종료에 대비하여 산입비율을 알아야 한다.

산입비율은 $[1 - \text{적용비율}(\text{applicable ratio})]$ 과 같다. 적용비율은 신탁과 직접적인 세대 생략 양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다음의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분자는 직접적인 세대 생략 증여로 양도된 자산이나 유산 신탁에 배당된 세대생략세 면제액이다. 한편 분모는 직접적인 증여나 신탁으로 양도된 자산 가액에서 동 자산에 해당하는 유산세와 IRC Section 2055에 따라 공제된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면제액으로 인한 가치 상승을 세대생략세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비율산식은 다음과 같다(IRC Section 2642 ; Randall 2005, 282).

〈표 2〉 적용비율 산식

$$\text{적용비율} = \frac{(\text{기금}) \text{ 해당 자산에 배분된 세대생략세 면제액}}{\text{해당(기금)자산 가액} - (\text{해당 자산의 연방 및 주정부 유산세} + \text{기부금공제})}$$

다. 최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2001년 부시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구조조정법(2001 EGTRRA¹⁴⁾)을 시행하였고, 2003년에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2003 JGTRRA¹⁵⁾)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0년에 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산세와 세대생략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도입되었고, 면세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즉, 면제액은 2001년 675,000달러에서 2009년 350만 달러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2010년 사망하는 납세자의 유산에는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세대생략세의 세율은 2001년 55%에서 2007-2009년에는 45%로 하락하였다. 세대생략세에서 자산의 양도자가 평생 면세 받을 수 있는 금액도 100만 달러에서 2004년 유산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종래 상속을 계기로 자동적으로 stepped-up이 되어 오던 자산의 basis가 2010년에는

14)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15) The Job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

carry-over 방식으로 변경되었다(2003 JGTRRA, § 541). 즉, 상속인이 향후 자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종래 취득한 가액 그대로 가져가게 되었다.

하지만, 2010년 12월 31일 이후 의회가 이러한 각종 감면과 일시적 폐지를 영구화하지 않으면 이들 감면조항이 모두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그 결과 2011년부터는 면세액이 다시 100만 달러로 줄어들고, 최고 세율도 55%로 상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위 기간 동안 의회에는 다양한 상속세 개정의견이 제안되었으나, 폐지부터 영구화까지 서로 너무나 큰 입장 차이로 어느 것도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2009년 12월 하원에서는 상속세를 영구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는 동 법안을 부결하였다.

이처럼 유산세 및 세대생략세의 폐지, 2011년 이후 높은 세율로의 복귀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내의 제시되는 입법적 대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2009년 수준의 상속세 복구(민주당 다수¹⁶⁾)와 보다 높은 공제액과 낮은 세율로의 개정입법(공화당), 그리고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장래를 향해서만 일정한 세율로 합의된 개정입법(민주당 일부)이다. 2010년 말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유산세와 세대생략세가 부활하지만 최고세율은 35%로 낮아지고, 공제액은 5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¹⁷⁾ 그리고 자산의 basis는 carry-over 방식 대신 stepped-up 방식으로 변경되었다.¹⁸⁾

2. 일 본

가. 개 요

일본의 상속세 제도는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가격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취득과세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가 유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을 보면 개인이 가득한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개인소득과세의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상속세는 완전한 유산취득방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산취득방식에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과세방식을 가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川上尙貴 2008, 148). 이에 대하여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속세 총액 산정 시에는 실제 유산분할과 관계없이 유산총액 및 상속인의 수, 그리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을 한다. 그 다음에 각 상속인의 납부세액 산정에서는 상속세의 총액을 실제 상속인이 상속받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

16) 오바마 정부는 2009년 기준으로 유산세를 영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 350만 달러 이상의 유산은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고 부부의 경우 적절한 계획으로 최대 700만 달러까지 유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7)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2010, § 302.

18) 다만, 2010년 중 상속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tepped-up basis와 35%의 세율, 500만 달러의 공제액이고, 두 번째는 유산세는 없고 carry-over basis를 적용받는 것이다.

액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세액공제 등이 이루어져 각자의 산출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세대생략세에 관하여는 일본 상속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일촌 혈족 및 배우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산출한 상속세액에 20%를 가산한다. 세대를 생략한 자뿐만 아니라 1촌 혈족이 아닌 자는 모두 할증과세하고 있다.

나. 과세체계

(1)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상속·유증(사인증여를 포함) 또는 증여(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상속인, 유산을 받은 자(수증자),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安島和夫 2010, 6). 이 중에서 재산의 취득자가 친자(親子(一寸)) : 일본에서는 이를 一親이라 함)관계의 혈족 및 배우자가 아닌 자가 재산을 상속하거나 유증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상속세액은 20% 증액된다.

(2)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상속세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하였거나 취득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모든 재산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산식에 기초하여 구한다(川上尙貴 2008, 704). 한편 상속재산 취득자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으로부터 공제된다.

〈표 3〉 일본 상속세의 과세표준

$$\text{상속세의 과세표준} = (\text{상속재산가액} + \text{간주상속재산가액}) - \text{비과세재산가액} \\ - (\text{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부담} + \text{피상속인의 증계채무})$$

(3) 세율 및 가산세액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재산 계급별에 따라 누진세체계로 되어 있다(安島和夫 2010, 64). 즉, 상속재산 계급이 1,000만 엔 이하의 10% 세율부터 동 계급 3억 엔 초과 50% 세율까지로 하여 6단계의 세율로 되어 있다.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상속 또는 유증에 관한 피상속인의 일촌 등의 혈족 및 배우자 이외의 자인 경우, 그 자에 관한 상속세액은 각 상속인 등의 상속세액의 계산에 의해 산출되어진 상속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한다(安島和夫 2010, 67-68).

일촌 등의 혈족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가) 일촌 등의 혈족에 포함되는 자

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을 때 또는 상속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습하여 상속인이 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일촌 등의 혈족에 포함한다(일본 상속세 기본통달 18-4). 또한 입양 전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없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자가 양자로 된 경우에는 입양 후 피상속인의 일촌의 혈족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액의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¹⁹⁾

(나) 일촌 등의 혈족에 포함되지 않는 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양자가 된 경우에는 일촌 등의 혈족에 포함되지 않는다(일본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²⁰⁾

(다) 유증에 의한 재산을 취득한 일촌 등의 혈족

상속을 포기한 자 또는 결격 혹은 폐제의 사유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자가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해서는, 그 자가 유증에 관한 피상속인의 일촌 등의 혈족(상속세법 제18조의 일촌 등의 혈족에 한함)이라면 상속세액의 가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일본 상속세 기본통달 18-1).

다. 최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일본 세제조사회는 2008년 자료를 보면 상속·증여세를 통한 세대 간 부의 원활한 이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자녀·고령화 및 경제의 스톱화의 진전에 따라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자산이전의 증가가 있게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이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내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체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稅制調査會 2008.11, 5-6).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富)의 재분배효과에 더하여 과세의 효율성(또는 중립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세로서 부의 재분배효과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세목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이러한 부의 재분배효과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경제 활동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에서는 상속세에 있어 여러 가지 특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관련 특례조치도 그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에서는 이 특례조치가 상속 후의 사업계속에 대해 과대한 유인(incentive)

19)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질의응답 사례 참조(<http://www.nta.go.jp/shiraberu/zeiko-kaishaki/shitsugi/sozoku/01/htm>).

20) 2. 前項の一親等の血族には、同項の被相続人の直系卑属が当該被相続人の養子となつている場合を含まないものとする。

을 가져오도록 하게 되면, 신규의 창업이나 새로운 사업 전개와 균형을 잃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탈루에 대하여 방관하는 것이 아님을 최근의 상속·증여세 개혁방향으로부터도 엿볼 수 있다. 비록 일본 정부세제조사회는 구체적인 수단 제시까지는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은 단계이지만,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계획적인 조세회피행위를 유발할 우려나 집행의 곤란성으로 과세탈루에 대한 대책 강구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상속세(증여세 포함) 세수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국세 수입의 3.2%라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日本國稅廳 2010, 51). 그러나 소자녀화 및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실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있어 중요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시사점

현재 일반적인 상속세에 대한 국가들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소득세와 상속과세가 이중과세라는 근거 하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려는 국가가 있고, 둘째, 상속과세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국가가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폐지한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완전히 자리 잡은 나라의 경우이다.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을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 주식 및 기타자산 등 일부 자산의 양도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자산가들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길을 열어놓게 되어 과세의 형평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의 현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상속과세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상속과세 면세한도를 상향하였으며, 2010년에는 상속세 및 세대생략세를 완전히 폐지하였다가, 최고 세율이 낮아지고 면세액 한도는 더 확대되어 2011년에는 다시 상속세와 세대생략세가 부활하였다. 하지만 모든 세대생략세가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일정범위 내의 금액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이러한 배려 없이 전액 할증 과세한다.

일본 또한 소자녀·고령화 및 경제의 스톡화의 진전에 따라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자산이전의

증가가 있게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이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 2005년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70%에서 50%로 인하하고, 각종 특례조치를 두었다.

이처럼 상속과세의 강화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 경제적 기회균등을 완전히 달성하는 것이 사실 상 어렵다는 판단 하에 상속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각국의 추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가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국민 정서상 상속세를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다른 국가들의 추세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견해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상속세 과세 제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하여 납세자의 순응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산계층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백덕현 2007, 4).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소자녀·고령화 및 경제의 스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대 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속세 및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소수의 국가만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공제 등의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최근 외국의 상속세의 개정 동향을 감안한다면 향후 세대 간 부나 소득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속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세대생략세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라도 응능부담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취득과세 형태로의 제도 개편도 고려해 볼 시점이다(Gale 2001, 60).

IV.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세대생략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를 하는 것은, 상속세는 1세대 상속에 1회 과세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세대생략상속을 하면 2회 이상 과세되어야 할 상속세가 1회만 부과되는 불균형이 생기고, 세대생략이전으로 재산을 무상 취득하는 자는 대부분의 경우 연령이 어려서 그 재산을 적정한 투자에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략이전되는 세대가 부담했어야 할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세대생략할증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그에 따른 제도의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

1. 유산과세와의 모순성

우리나라의 상속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남겨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과세상 편의를 위해서 증여자 기준이 아닌 수증자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다(임승준, 2010, 750).

현행 상속세법이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 있어 보인다.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할증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산취득과세를 취할 때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유산과세임을 고려한다면 1세대 1회 과세원칙(一世代 一回 課稅原則)이 꼭 관철되어야 하는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자녀 등의 직계비속에게 넘어가는 재산의 이전은 세대(generation) 간의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세는 세대이전세로서 단 한 번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자 원칙이었다. 그런데 유산과세체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과세하면 되는 것일 뿐, 세대마다 과세한다는 원칙은 부의 무상이전을 저해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편법이전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왔기 때문에 국민정서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를 단순 폐지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세대생략할증과세의 범위나 공제에 대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에 있어 직계비속에 대해서만 세대생략할증과세를 하고 있는 점도 유산과세 및 조세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 현행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세대 이상의 직계비속에게 상속을 할 경우에만 할증과세를 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세대에 상관없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어가는 데에 따른 조세이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지정한 수유자(受遺者)로서 혈족이 아닌 전혀 남일 수도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습으로 볼 때에는 혈족이 아닌 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에게도 재산이 상속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조세평등의 측면에서도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에(오 윤, 2011, 116),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로 상속된다 하더라도 과세제도의 구성상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1촌의 혈족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할증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이념에 합치할 것이다. 아니라면 독일의 경우처럼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관계(친인척도)에 따라 과세등급을 달리하여, 적용 할증세율을 차등화 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다.²¹⁾

21) 독일 상속증여세법 제15조 1항에서는 과세등급을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제Ⅰ등급 : 배우자, 자녀 및 입양자녀, 자녀 및 입양자녀의 후손, 부모와 그 선대(사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 제Ⅱ등급 : 부모와 그 선대(증여의 경우),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1대 후손, 양부모, 사위 및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
 - 제Ⅲ등급 : 모든 다른 재산의 취득자(특히 법인) 및 조건부증여의 경우
- 등급과 취득재산의 가치에 따라 7~50%의 세율이 적용된다(김유찬 외 2009.10, 371-374).

2. 조세회피 방지 효과성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주된 입법목적은 생략 이전되는 세대가 부담했어야 할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즉, 조세회피 방지수단으로서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과세에 있어 조세회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적발확률이 낮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거나 또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상속세는 과세사실이 미리 예견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대비할 수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미리 연구하여 면밀하고도 지능적으로 상속세의 회피를 진행할 수도 있다. 상속세 절세대책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에 나타난 상속세 및 세대생략할증과세의 회피 사례들을 비롯하여 이미 세무 조사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회피방법들은 다음과 같다.²²⁾

우선 상속세 및 세대생략할증과세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상속재산을 사전에 차명주식이나 차명계좌로 은닉시켜 놓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시키는 방법, 둘째, 상속재산에 부담된 부채 등을 과대계상 하는 방법, 셋째, 증여세는 납부하면서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변칙적인 사전 증여를 하여서 사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방법, 넷째,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을 들고 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여 사망보험금 수령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방법, 다섯째, 직계비속 명의로 설립한 회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여섯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거액을 기부하고 그 비영리단체를 직계비속(상속인)이 관장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 국세청의 조사에 따른 ‘부의 편법 대물림’ 탈루 유형 사례를 보면 더욱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 적발된 탈루 유형 사례를 보면 첫째, 차명관리 주식을 실제 주식소유자가 직계비속인 것처럼 허위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포탈하였고, 둘째, 사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직계비속이 대주주인 법인에 저가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전상속을 하였으며, 셋째, 상속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계비속명의 해외 Paper Company에 투자를 위장하여 재산을 반출하는 등 사전증여를 계획하였고, 넷째,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사주의 직계비속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이 있다.²³⁾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속세 전반뿐만 아니라 세대생략할증과세에 조세회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입법목적이 다른 수단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고, 2008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79%에 불과하기(국세청 2009, 9) 때문에 조세회피를 위한 비용이 증가되는 것보다는 제도를 완화하여 조세회피의 동기를 감소시키고 과세표준을

22) 국세청 홈페이지의 보도 자료를 정리하였음(<http://www.nts.go.kr/news>).

23) 국세청 보도자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적극 추진’, 2011.7.12 참조.

양성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세정의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수평적 형평성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득 계층 간·소득 종류 간 공평과세를 실현하여야 것이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과세할 때 조세정의가 구현됨을 물론, 납세자는 세무관청을 신뢰할 것이다.

3. 형평성

가. 가업승계제도와 의 형평성

가업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일정범위의 물적 공제를 허용하여 그 세 부담을 감해주고 있다. 이에는 크게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가 있다. 그 중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상당액을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업승계제도의 개요

여기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²⁴⁾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또한 여기서의 가업에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40%²⁵⁾)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²⁶⁾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24) 이는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25)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제한을 30%로 완화하고 있다.

26) ①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로 재직한 경우일 것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가업에 종사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일 것

기업의 상속에 있어서는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²⁷⁾ 기업상속공제의 범위는 1997년 이래 계속 확대하여 왔지만, 동시에 비교적 엄격한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있다(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증여세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 일정한 과세특례²⁸⁾를 인정하고 있다.

(2) 세대생략할증과세와의 형평성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세제개선의 주요 방법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기업승계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여 상증세법을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최초로 기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도입하였다. 그 지원 대책이 대상범위가 협소하고, 요건 또한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적인 기업승계의 지원이 어려웠다. 그 후 2008년 12월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요건이 확대되었다.²⁹⁾

이런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완전포괄주의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과세가 도입되는 등 상속과세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대생략할증과세 또한 세율이 강화되기만 하고 다른 고려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업승계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기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장려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³⁰⁾ 세대생략할증과세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업승계제도를 지원하는 데 반하여 그 목적과 배치되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형평상 불합리하다. 기업승계제도가 일종의 특례이지만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하나의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세제상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세대생략할증과세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령화된 사회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지 못할 것이다.

27) 다만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6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 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 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을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2억 원 기준에 있어서도 해당 기업상속재산가액이 2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공제범위를 결정한다.

28)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기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29)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도 대상 확대 및 요건 보완의 내용이 있다.

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은 중소기업의 사전상속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법률 제8827호(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개정문).

따라서 세대생략할증과세 제도에 있어 가업상속에 허용되는 정도의 요건과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완화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생략상속에 한하여 과세를 완화하여야 한다.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조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공제한도를 적용하거나, 기존 할증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등의 다른 제도와 의 형평에 맞는 완화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나. 단기재상속공제와의 형평성

단기재상속공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함으로써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후상속의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상증세법 제30조 제1항).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액공제기준액에 전상속의 개시시점부터 후상속의 개시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른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일정률은 재상속이 1년 이내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100%, 재상속의 개시시간이 1년씩 길어질 때마다 10%씩 줄어들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동조 제2항).

〈표 4〉 세액공제기준액

$$\text{세액공제기준액} = \text{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times \left(\frac{\text{재상속분의 재산가액} \times \text{전의 상속세과세가액}}{\text{전의 상속세재산가액} \times \text{전의 상속세과세가액}} \right)$$

다만,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22조). 전 상속된 특정 재산이 처분되어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변경된 다음 그 변경된 형태의 재산이 후상속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재상속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서면 4팀-975, 2006.4.14).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위의 단기재상속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데, 후자의 경우에는 단기재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 전자의 경우에는 할증 과세된 금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그 실질은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에 대한 할증과세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세대생략할증과세 제도에 있어 단기재상속공제를 적용해주어야 한다.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전의 할증 과세된 금액을 단기재상속공제분처럼 환급해주는 것이 제도 간 형평에 있어 타당할 것이다.

4. 사회 적합성

가.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일찍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각각 진입하여 2050년에는 세계최고령국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UN, 2009).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달하는 사회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세로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 되는 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제, 사회운영구조를 그대로 운영할 경우 내수가 위축되거나 노동력부족 등으로 구조적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의 자료³¹⁾에서도 한국의 국가별 인구 순위는 하락세가 지속되어 저출산 및 노령화로 2018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해 2050년에는 2009년보다 641만 명이나 줄며, 2050년에는 한국인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령화 지수도 세계최고수준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러한 사회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의 고령화를 수반하며, 이는 경제성장의 주력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투자는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또한 기업이 승계되는 시점에서 승계로 인한 보유 지분율의 감소와 경영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기업승계와 관련되어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중한 조세비용이 원활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부의 이전 자체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부당한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다. 부의 세대 이전 문제를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닌 경제구조의 활성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무형 자산의 전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및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만약, 부의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부실화 및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작게는 기업부터 크게는 국민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많아질 경우,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 간의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과도한 할증과세로 인하여 투자위축이나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실제 상속 시 과중한 과세로 인하여 편법 상속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세대를 생략한 부의 이전에 대한 문제가 경제 및 사회의 현황으로 부각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점진적인 완화일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조세중

31)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2011.1.30. 방문.

립성 측면에서도 납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선택을 저해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를 완화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국제화 사회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하고 있다. 국제거래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 축소는 민간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다. 성장보다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부들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민간 경제활동의 국내의 구분을 없애고 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른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에 따른 불편과 제약에 불구하고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자본은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게 된다. 아울러 거둔 이익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데 제약이 적은 곳을 선호한다. 세금부담이 낮은 곳은 이러한 민간의 요청에 부합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의 글로벌화는 국가 간의 지나친 투자유치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세목과 세율에 대한 자본이동의 탄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이용섭, 2005, 40). 세계 각국이 개방경제 하에서 외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조성하여 자국 자본을 국내에 머무르게 하고, 외국 자본을 유인하기 위하여 자국의 세 부담을 인하하기 위하여 자국의 조세정책의 한도 안에서 노력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국민경제 내 국민소득, 대외수지 및 재정수지 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각자에게 가장 세금부담이 적은 지역을 찾아 움직이는 민간의 경제활동으로 각국 정부의 과세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외국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의 자본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본까지도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자산을 이전하고 거주지까지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조세정책을 외국보다 유리하지는 못하더라도 불리하지는 않게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부의 이전동기를 저해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거듭 언급한 것처럼 제도의 완화만이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5. 구체적인 방안

상기 문제점들의 공통적인 해결책은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점진적인 완화일 것이다. 제도를 완화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도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처럼 1촌의 혈족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할증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이념에 합치할 것이다. 아니라면 독일의 경우처럼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개인적

인 관계(친인척도)에 따라 과세등급을 달리하여, 적용 할증세율을 차등화 하는 것이 차선택이 될 것이다.

제도의 요건과 공제한도는 가업상속에 허용되는 정도의 요건과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완화책이 필요하다.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조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큰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존 할증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등의 다른 제도와의 형평에 맞는 완화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요건에 근로자의 승계 등 공익성을 추가하여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일정한 공익에 기여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에 있어 단기재상속공제를 적용해주어야 한다.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전의 할증 과세된 금액을 단기재상속공제분처럼 환급해주는 것이 제도 간 형평에 있어 타당할 것이다.

V. 결 론

본고에서 연구자는 세대생략할증과세에 관한 현행 상증세법과 외국의 세제를 살펴본 후, 이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소수의 국가만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공제 등의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제도 자체, 입법목적, 다른 제도와의 형평, 사회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현행 상증세법이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 있다.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할증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산취득과세를 취할 때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일 것이다. 두 제도는 상호모순적인 관계이므로 어느 한 제도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및 국민정서상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주된 입법목적은 생략 이전되는 세대가 부담했어야 할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조세회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위한 비용이 증가되는 것 보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조세회피의 동기를 감소시키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득 계층 간·소득 종류 간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두 가지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먼저 가업승계제도를 지원하는 데 반하여 근본적인 목적이 동일한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형평상 불합리하다. 따라서 세대생략할증과세 제도에 있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생략상속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등의 다른 제도와의 형평에 맞는 완화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단기재상속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데, 후자의 경우에는 단기재상속공제가 적용되는데 반해 전자의 경우에는 할증 과세된 금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그 실질은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전의 할증 과세된 금액을 단기재상속공제분처럼 환급해주는 것이 제도 간 형평에 있어 타당할 것이다.

네 번째,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세대를 생략한 부의 이전에 대한 문제가 경제 및 사회의 현황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고, 경제의 국제화로 인한 국제조세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제도는 조세중립성 측면에서도 납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선택을 저해하므로 완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 김유찬 ·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 백덕현, “상속세및증여세의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 기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오 윤, 『세법총론』, 한국학술정보, 2011.
-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5.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
- 이태로 · 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9.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0.
- 재정경제부, 『'93 간추린개정세법』, 1994.
- _____, 『'96 간추린개정세법』, 1997.
- 최명근,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3.
- Gale, William G., James R. Hines Jr., and Joel B. Slemrod, *Rethinking Estate and Gift Taxation*.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 Gale G. William and Joel B. Slemrod, *We Tax Dead People : Draf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 John K. McNulty and Grayson M.P. McCouch,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West Publishing, 2003.
- Randall J. Gingiss, *Estate and Gift Tax*(16th Edition), Thomson West, 2005.
- U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 日本 国税庁, 『国税庁レポート』, 2010.
- 税制調査会, “平成21年度の税制改正に関する答申”, 2008.11.
- 安島和夫, 『相続税法－理論と計算』, 税務経理協会, 2010.
- 川端康之. “アメリカ合衆国における相続税・贈與税の現況”, 『日税研論集』 Vol.56,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2004.
- 川上尚貴 編著, 『圖説日本の税制』, 2008.

The Study on Generation Skipping Tax

Dong-Won Lim*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ed the current Generation Skipping Tax(GST) of Korea and its relevant tax of several countries. And the author tried to find a way to improve problems. The current GST has the following problems in respect of the system itself, the legislative purpose, the principle of equity, the social politics. As a result of research, the author are proposing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because the Inheritance tax adopted estate tax type, GST is inconsistent in itself. The GST has validity when the Inheritance tax adopted the inheritance tax type, provided GST should be alleviate under the domestic conditions.

Second, in respect of the legislative purpose, GST did not prevent Tax Avoidance is a Problem that happen in any times. So, It is proper that GST should be alleviate.

Third, in respect of equity on different system, tax system associated with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short-term re-succession, GST is not perfect. Because GST is equal two system in terms of substance and purpose, GST should be alleviate an essential condition.

Fourth, owing to an aging society and globalization of economy, the problem related GST will be on the increase. Based on this reason, GST needs strategic improvements of alleviation.

〈Key words〉 Generation Skipping Tax, Inheritance Tax, Estate Tax Type, Equity of Tax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Law, Hanyang University. (Researche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